

제주지방법원 2020. 5. 18 선고 2019가단659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D

변론 종결 2020. 4. 20

판결 선고 2020. 5.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9,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2020. 5. 18.까지는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644,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4. 23. 주식회사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9. 5.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6. 27.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이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4327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20. 1. 14.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2020. 1. 28. 위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 2020. 3. 23. 기준 이 사건 건물의 2020. 3. 23.경부터 2021. 3. 22.경까지의 월 차임은 543,333원으로 평가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2019. 5. 13.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사실, 피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2020. 1. 28.경까지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은 앞서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2020. 3. 23. 기준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이 월 543,333원인 사실은 앞서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건물을 점유한 기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합계 4,609,567원 (= 543,333원 x 2019. 5. 13.부터 2020. 1. 13.까지 8개월 + 543,333원 x 2020. 1. 14.부터 2020. 1. 28.까지

15일/31일)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의

다음날인 2020. 1.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

별지